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선람	기관의장

제758호 2021. 12. 23.(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800호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80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사천시 조례 제1802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1803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사천시 조례 제1804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사천시 조례 제1805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사천시 조례 제1806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사천시 조례 제1807호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23
○ 사천시 조례 제1808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사천시 조례 제1809호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 31
○ 사천시 조례 제1810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36
○ 사천시 조례 제1811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55
○ 사천시 조례 제1812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61
○ 사천시 조례 제1813호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67
○ 사천시 조례 제1814호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78
○ 사천시 조례 제1815호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80
○ 사천시 조례 제1816호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85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817호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90
○ 사천시 조례 제1818호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 92
○ 사천시 조례 제1819호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4
○ 사천시 조례 제182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96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415호 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101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387호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 고시 ---------- 119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635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4
○ 사천시 공고 제1638호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2
○ 사천시 공고 제1649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67
○ 사천시 공고 제1659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73

회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758호

사천시 조례 제180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 검토) ① 시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신설 2021.12.23.>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남/여)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남: 명/ 여: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천시 조례 제180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72명”을 “98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55명”을 “96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7명”을 “21명”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

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1.12.2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개정 2021.12.2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7% 이내	31% 이내	25% 이내	9% 이상	1% 이내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	-	-	-

【별표 3】<개정 2021.12.2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984**							
정무직 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계	**953**							
3급	1	1						
4급	7	4	1	2				
5급	51	26	2	6	3	1	7	6
6급 이하 소계	893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계	**-**							
6급 상당	-							
연구직 계	**1**							
연구사	1							
지도직 계	**29**							
지도사	29							

사천시 조례 제180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 사업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사천시”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의원,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로 한다.

제7조제13호 중 “변화사비용”을 “변호사 비용”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사천시의회 의장과 통합운영) 시장은 사천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80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2조부터 제115조”를 “제125조부터 제128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장의”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고”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를 “법 제128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을 “법 제3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80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복지관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호가목 중 “시의”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시설사용 5일 이전에”를 “시설사용일 5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사용 4일 전에”를 “시설사용일 1일 전까지”로,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하고 9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90퍼

센트를 반환한다”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자란 중 대표자 성명란에 “(남/여)”를 추가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단체명(성명)란에 “(남/여)”를 추가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성명란에 “(남/여)”를 추가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2021.12.23.>

수강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반환사유 발생일</th><th>반환금액</th></tr>
<tr><td colspan="2">1. 제12조제1호에 따른 경우</td><td>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td><td>납부한 수강료 전액</td></tr>
<tr><td rowspan="4">2. 제12조제2호에 따른 경우</td><td rowspan="3">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td><td>수강개시 전</td><td>납부한 수강료 전액</td></tr>
<tr><td>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td><td>납부한 수강료의 70%</td></tr>
<tr><td>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td><td>납부한 수강료의 50%</td></tr>
<tr><td>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td><td>반환하지 아니함</td></tr>
<tr><td colspan="2">나.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td><td>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td></tr>
<tr><td colspan="2">비 고</td><td colspan="2">※ “수강기간”이란 징수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 “총 수강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td></tr>
</table>

사천시 조례 제180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한”을 “위임된”으로, “시 공유재산”을 “사천시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은 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시의회에서”를 “사천시의회에서”로, “시의회 사무국장”을 “사천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중 “따른 사용료의 조정”을 “따라 사용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로, “70”을 “100”으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등)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및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경작자에게 1천제곱미터 이하를 수의계

약에 따른 대부 및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제24조의3(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상남도지사 인증 농특산품
2.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농특산품
3.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③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2조 중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로, “70”을 “100”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4조제6항”을 “영 제14조제

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80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80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사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재정지원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한 사항

사천시 조례 제180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료 등을”을 “입장료 및 이용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의 단원

4. 국가보훈대상자

5. 동절기(12월～2월) 입장자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7.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12.23.>

자연휴양림 입장료, 이용료 및 이용시기, 이용시간
(제4조제1항 관련)

□ 입장료

구 분	기 준	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어 른	1인1일	1,000	800	· 어린이: 만7세~12세 · 청소년: 만13세~18세 · 성 인: 만19세 이상 · 단체기준: 20인 이상
청소년·군인	1인1일	700	500	
어 린 이	1인1일	400	200	

□ 이용료

구 분			이용 인원	이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시설명	명 칭	면 적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숙박시설	숲속의 집 (A형, B형)	28.92㎡ (원룸형)	2인~4인	1동/1일	70,000	100,000	입장료 면제
	숲속의 집 (장애인)	30.42㎡ (원룸형)					
	숲속의 집 (C형)	37.83㎡ (투룸형)	4인~6인	1동/1일	90,000	120,000	
	산림휴양관	69.09㎡ (복층형)	8인~10인	1동/1일	120,000	170,000	
기타시설	야영데크	16.0㎡	4인	1개소/1일	15,000	20,000	입장료 면제
	야영데크	30.0㎡	6인	1개소/1일	25,000	30,000	

□ 기타시설 이용료: 위 시설 외 연중 무료

□ 자연휴양림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

- 성수기: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중: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서 정한 법정 공휴일의 전 날과 대체공휴일의 전 날

-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 일일 개장(입장)시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별표 3] <개정 2021.12.23.>

자연휴양림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유 형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예정 당일 취소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예정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30% 배상	

1.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기상청이 주의보 또는 경보 등을 발령하여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당일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정부의 여행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

고가 있을 경우

- 숙박시설의 폐쇄 ·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된 경우
-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필수 사회 ·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

사천시 조례 제180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을 사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사천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내

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4명 이내

3. 농어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인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천시 조례 제181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과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

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

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1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킨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제11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소속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⑤ 공무상 제11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의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다만,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⑦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제15조(병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공가)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교육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에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17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1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⑪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⑬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⑭ 의장은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⑮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은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휴가신청은 유산일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8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이 조례 제11조제1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6항·제10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1.12.23.>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신설 2021.12.23.>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이 담당한다.

[별표 2] <신설 2021.12.2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7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신설 2021.12.23.>

경조사 휴가일수표(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	대상	일수
입 양	본인	20

비고: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별표 4] <신설 2021.12.2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신설 2021.12.23.>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제18조 관련)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의회 의장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3.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4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병가

가. 의회 의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5.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사천시 조례 제181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

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1.12.23.>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제5조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버스)운임	숙박비(1박당)
제1호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동차운임(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공용차량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12.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의 정수 배정 내용 통보**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차량의 정수 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용도	③ 규모	④ 차 이름	⑤ 연식	⑥ 배정 정수

⑦ 취득방법(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	⑧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 예산액	⑨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	⑩ 비 고

※유의사항
"④ 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 정량을 적는다.

붙임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1부.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사천시 조례 제181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사천시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④ 의장은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체력단련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

2.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출산 축하금·축하 선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녀 격려 선물 제공

3.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4. 본인, 배우자의 재해·사망시 위로 격려

5. 직장화합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노사화합 연찬회 지원

6. 소속공무원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7. 다자녀(2자녀 이상을 말한다) 직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4명 이내

2.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3명 이내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후생복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사천시의 장과 통합 운영) 사천시의회의장은 사천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81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

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시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12.23.>

[ ] 제정
조례의 [ ] 개정 청구서
[ ] 폐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신청 [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12.23.>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2.23.>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12.23.>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12.23.>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경상남도　　사천시의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12.23.>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사천시 조례 제181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당) 사천시의회 의원과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사천시의회 그 밖의 위원회 위원: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81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

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임용권자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임용권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임용권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81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시의회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의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시의회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제8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천시의회 의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81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0조와 제91조에 따라 시의회”를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사천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의회”를 “사천시의회”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위원회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81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6조 및 제62조”를 “제64조 및 제7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천시 의회”를 “사천시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의원”을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둔다.”를 “두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81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라 시회”를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사천시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시의회(이하”를 “사천시의회(이하”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첫째주 화요일로 한다”를 “중에 집회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시회는 제2조에 따른 회의일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수시 집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58호

사천시 조례 제182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2조”를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29

조까지”로, “법 제117조 와 제120조”를 “법 제131조와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법제41조 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27조”를 “법 제34조”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41조제3항”을 각각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사천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례」의 개정) 사천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3조(「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를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로 한다.

제2조 중 “5명 이하로 하되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10명 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의 개정)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4조”로 한다.

별표의 비위의 정도란 중 “(법 제36조제2항 위반)”을 “(법 제44조제2항 위반)”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6조(「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3조 별표 4”를 “제36조 별표 5”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 중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제7조(「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를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훈령 제415호

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12월 2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능) 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2. 주민이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3.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 주민이 속하는 구역

4. 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5. 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사천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기피·회피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안, 일시, 장소를 미리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음피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다.

④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 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2. 회의 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제11조(출석) ①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위원
3. 간사 및 서기
4. 심의안건 검토담당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사람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결)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의결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
2.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
3.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재심의의결”

③ 조건부의결의 경우 조건의 내용을 의결서에 명시하며, 재심의의결의 경우 차기 회의에서 처리한다.

제13조(심의방법) ① 위원은 간사 및 심의안건 검토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2조의 심의·의결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과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의안건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의결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및 환수) ① 위원회는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의결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다.

② 위원회는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환수 의결 결정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전달한다.

제16조(의결) ① 심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안건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각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 및 대리인은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가 신청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장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제18조(심의의결서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기재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회의록 끝에 편철한다.

제19조(회의록)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기타 주요 논의내용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제20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21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누설을 이유로 해촉된 위원은 추후 재위촉할 수 없다.

제22조(회의결과의 이관) 시장은 회의 결과를 보상금 결산보고서와 함께 국방부에 제출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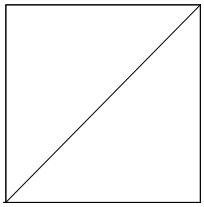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 . . (제 회)

의결사항 (보고사항)

※( ) : 보고안의 경우

제 목

제 출 자	
제출연월일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은 보고이유)

3. 주요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당해 의안의 내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기 타

※ 의안 작성 요령

1. 의안번호: 당해의안의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의결연월일: 의결한 회의의 연월일과 당해회의의 연도별 회의차수를 기입한다.(보고의안은 보고연월일)
3. 의결의안 제목: 의결 의안의 제목을 기입한다.(보고의안은 보고의안 제목)
4. 제출자: 제출자의 직위를 기입한다.
5. 제출연월일: 제출연월일을 기입한다.
6. 의결주문: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간명하게 기술하며, 그 내용이 별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한다.(보고의안은 보고주문)
7.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추진배경과 기대효과를 상세히 기재한다.(보고의안은 보고이유)
8. 주요내용: 의안심의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요골자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당해 의안의 내용을 직접 기재할 수 있다.
9. 참고사항: 상정의안의 심의·의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상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조문 또는 의결사항 등
   - 제안·건의 또는 보고경위를 밝힐 수 있는 증거서류 사본
   -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12.23.>

심 의 의 결 서

제00회		회의일시/장소	
의안번호		의안명	
의결주문	의결내용 기술		
의결이유	원안의결시 원안대로 의결한다로 기술 수정의결시 수정내용 및 변경사유 기술 ※ 별지필요시“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적고 내용은 별지작성		
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 분	성 명	의 견 (동의여부, 의견)	서 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2.23.>

서 면 심 의 의 결 서

의안명	
의결여부 (○ 표시)	(의결찬성 / 반대)
검토의견	의결찬성 및 반대 모두 의견 기술
심의·의결일 : . . . 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12.23.>

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의 제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참석위원		불참위원	
결 과				
주요 내용	발언자	주요 발언 사항		

작성자 : 간사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12.23.>

제척요건 사전 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의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의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예 ( )	아니오 ( )
2	위원이 해당 의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예 ( )	아니오 ( )
3	위원이 해당 의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예 ( )	아니오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의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예 ( )	아니오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의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12.23.>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12.23.>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9. 위원의 자격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천시 고시 제2021-387호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2012.9.13.)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 고시되고, 사천시 고시 제2014-31호(2014.3.27.), 제2014-85호(2014.6.19.), 제2015-76호(2015.6.25.), 제2016-4호(2016.1.14.), 제2016-267호(2016.12.29.), 제2017-126호(2017.7.13.), 제2017- 251호(2017.12.21.), 제2018-262호(2018.12.27.), 2019-294호(2019.12.26.)호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 고시한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사천 대동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서부경남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 및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나. 면 적 : 102,469㎡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12. 9. 13. ~ 2021. 12. 31.

(변경) 2012. 9. 13. ~ **2022. 12. 31.**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주)대동정비 대표이사 양태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 154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전	답	구	대	임	도
필지수	37	14	9	3	4	4	3
면 적(㎡)	102,469	16,672	13,122	2,477	15,264	53,633	1,301
구성비(%)	100.0	16.3	12.8	2.4	14.9	52.3	1.3

나. 소유자별 현황

구 분	계	국유지			사유지
		소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필지수	37	7	6	1	30
면 적(㎡)	102,469	3,992	3,903	89	98,477
구성비(%)	100.0	3.9	3.8	0.1	96.1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02,469	100.0	
산업시설용지	70,890	69.2	
공공시설용지	31,579	30.8	
도 로	12,693	12.4	
주 차 장	1,650	1.6	
유 수 지	1,810	1.8	저류지
공 원	1,560	1.5	소공원
녹 지	13,866	13.5	완충녹지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합계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	631	12,693	2	384	8,579	1	247	4,114	-	-	-
중로	2	594	12,149	1	347	8,035	1	247	4,114	-	-	-
소로	1	37	544	1	37	544	-	-	-	-	-	-

나)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2	20 ~26	집산도로	1,072 (347)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도로	축동산단 대동산단	사천시 고시 제2012-152호 (2012.9.13.)	
기정	중로	2	53	15	집산도로	247	중로1-42	중로2-50	일반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소로	1	76	10	국지도로	37	중로1-42	사다리 116-1번지	일반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2)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0	주차장	사다리 133-11번지	1,650	-	1,65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3)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5	대 동 소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43-28번지	1,560	-	1,56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4)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3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3-1번지	2,100	-	2,10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4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43-28번지	890	-	89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5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20번지	2,270	-	2,27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3-16번지	6,267	-	6,267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7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18-1번지	2,339	-	2,339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5) 유수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0	대 동 유수지	저류시설	사다리 131번지	1,810	-	1,81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6) 상수도 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용수수요량(㎥/일)	비 고
합 계	254㎥/일	계획용수량 254㎥/일 (축동일반산업단지 배수시설 사용)
공업용수	226㎥/일	
생활용수	28㎥/일	

7) 오·폐수 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오·폐수량(㎥/일)	비 고
합 계	45㎥/일	계획오·폐수량 45㎥/일 (축동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사용)
산업폐수	20㎥/일	
생활오수	25㎥/일	

8)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가) 전력

구 분	전력소요예상량(천kw/일)	비 고
계	3.83천kw/일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나) 통신

구 분	수요량(회선)	비 고
계	37회선	(주)KT와 협의하여 공급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자금조달 : 사업시행자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 기 정

구 분	투자내역	예상투자액(천원)	비 고
2009년 ~ 2013년	용지매입비	5,920,000	
	산업단지 인허가 용역비	300,000	
	소 계	6,220,000	
2014년 ~ 2016년	용지매입비	1,250,000	
	보상비	300,000	
	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2,217,000	착공비, 기성
	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400,000	용역비, 감리비
	각종 부담금	170,000	
	사무비	130,838	
	소 계	4,467,838	
2017년	용지매입비	-	
	보상비	-	
	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553,000	
	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50,000	
	각종 부담금	6,007	
	사무비	25,615	
	소 계	634,622	
2018년 ~ 2021년	용지매입비	1,230,694	
	보상비	756,846	
	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3,000,000	
	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50,000	
	각종 부담금	30,000	
	사무비	40,000	
	소 계	5,107,540	
합 계		16,430,000	

■ 변 경

(단위:천원)

투자내역	용지 매입비	산업단지 인허가 용역비	보상비	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각종 부담금	사무비	합 계
합 계	8,400,694	300,000	1,056,846	5,770,000	500,000	206,007	196,453	16,430,000
2009	-	-	-	-	-	-	-	-
2010	-	-	-	-	-	-	-	-
2011	-	-	-	-	-	-	-	-
2012	-	300,000	-	-	-	-	-	300,000
2013	5,920,000	-	-	-	-	-	-	5,920,000
2014	-	-	300,000	-	400,000	60,000	40,000	800,000
2015	-	-	-	217,000	-	60,000	40,000	317,000
2016	1,250,000	-	-	2,000,000	-	60,000	50,838	3,350,838
2017	-	-	-	553,000	50,000	6,007	25,615	634,622
2018	1,126,362	-	756,846	1,000,000	10,000	10,000	10,000	2,918,208
2019	104,332	-	-	500,000	10,000	10,000	10,000	634,332
2020	-	-	-	1,000,000	20,000	5,000	10,000	1,030,000
2021	-	-	-	-	-	-	5,000	5,000
2022				500,000	10,000	5,000	5,000	520,000

○ 재원조달계획은 당사 투자자금으로 84억과 금융권 대출자금(PF) 8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임

(단위:천원)

투자내역	자기자본	금융권 대출자금(PF)	합 계
합 계	8,430,000	8,000,000	16,430,000
2009	-	-	-
2010	-	-	-
2011	-	-	-
2012	300,000	-	300,000
2013	5,920,000	-	5,920,000
2014	800,000	-	800,000
2015	317,000	-	317,000
2016	950,838	2,400,000	3,350,838
2017	34,622	600,000	634,622
2018	18,208	2,900,000	2,918,208
2019	34,332	600,000	634,332
2020	30,000	1,000,000	1,030,000
2021	5,000	-	5,000
2022	20,000	500,000	520,000

10. 수용 · 사용할 토지 ·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 : “붙임1”

11.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업 종	면 적(㎡)	구성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70,890	100.0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토지(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합 계	102,469	100.0	-
산업시설용지	70,890	69.2	사업시행자 귀속
공공시설용지	16,153	15.8	-
도로(중로1-42)	8,035	7.9	사천시 무상귀속
도로(중로2-53)	4,114	4.0	사천시 무상귀속
도로(소로1-76)	544	0.5	사천시 무상귀속
유수지⑩	1,810	1.8	사업시행자 귀속
주차장㉚	1,650	1.6	사업시행자 귀속
녹지용지	15,426	15.0	-
소공원㊺	1,560	1.5	사업시행자 귀속
완충녹지㊸	2,100	2.0	사천시 무상귀속
완충녹지㊹	890	0.9	사천시 무상귀속
완충녹지㊺	2,270	2.2	사천시 무상귀속
완충녹지㊻	6,267	6.1	사천시 무상귀속
완충녹지㊼	2,339	2.3	사천시 무상귀속

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단일기업이 입주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귀속 하지 않음

나. 시설물(변경없음)

구 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계획
도 로 (각종포장포함)	중로1-42	B=20~26m	L=347m	무상귀속
		가로수(이팝나무)	69주	
		교통표지판(각종)	12개소	
		투광기(H=8.0m)	4개소	
	중로2-53	B=15m	L=247m	무상귀속
		가로수(이팝나무)	51주	
		교통표지판(각종)	8개소	
	소로1-76	B=10m	L=37m	무상귀속
우 수	L형 측구	B=0.5m	L=1,236m	무상귀속
			L=203m	사업시행자 귀속
	철근콘크리트 수로관	800B	L=79.0m	무상귀속
	우 수 관	∅300~1350mm	L=1,119.6m	무상귀속
	집 수 정	0.7*0.7*1.0	1.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0.9*0.9*1.5	3.0개소	무상귀속
		1.5*1.5*1.6	2.0개소	무상귀속
		1.5*1.5*1.6	1.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1.5*1.5*2.0	1.0개소	무상귀속
	우수받이	0.3*0.4	59.0개소	무상귀속
	우수맨홀	사각특2호	15.0개소	무상귀속
		사각특4호	5.0개소	무상귀속
	도수로	0.5*0.35	L=25.0m	무상귀속
			L=42.0m	사업시행자 귀속
	BOX	1.2*1.0	8.5m	사업시행자 귀속
	U형개거	1.2*1.0	L=4.5m	사업시행자 귀속
		1.5*1.0	L=37.1m	무상귀속
오 수	오 수 관	∅75~250mm	L=460.0m	무상귀속
	오수맨홀	원형1호	6.0개소	무상귀속
	가압맨홀	2.0x2.0x3.5	1개소	무상귀속
상 수	상수관로	∅80mm	L=489.0m	무상귀속
		∅50~75mm	L=18.0m	무상귀속
	소화전	지상식	1.0개소	무상귀속
구 조 물	전석	H=0.5~3.5m	414.5m	무상귀속
전 기	가로등	H=10.0m	14.0개소	무상귀속
저 류 지	저류시설	1식	1.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공 원	공원시설	1식	1.0개소	사업시행자 귀속
녹지공간	수 목	스트로브잣나무	1,419.0주	무상귀속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02,469	-	102,469	100.0	-
일반공업지역	102,469	-	102,469	100.0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대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102,469	-	102,469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합계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631	12,693	2	384	8,579	1	247	4,114	-	-	-
중로	2	594	12,149	1	347	8,035	1	247	4,114	-	-	-
소로	1	37	544	1	37	544	-	-	-	-	-	-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2	20 ~26	집산 도로	1,072 (347)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축동산단 대동산단	사천시 고시 제2012-152호 (2012.9.13.)	
기정	중로	2	53	15	집산 도로	247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소로	1	76	10	국지 도로	37	중로1-42	사다리 116-1번지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나)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0	주차장	사다리 133-11번지	1,650	-	1,65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다)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5	대 동 소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43-28번지	1,560	-	1,56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라)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3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3-1번지	2,100	-	2,10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4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43-28번지	890	-	89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5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20번지	2,270	-	2,27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3-16번지	6,267	-	6,267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기정	57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18-1번지	2,339	-	2,339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마)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0	대 동 유수지	저류시설	사다리 131번지	1,810	-	1,81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Ⅰ-1	Ⅰ	70,890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44,160	산업시설용지
Ⅰ-2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26,730	산업시설용지
Ⅱ-1	Ⅱ	16,153	축동면 사다리 133-11번지 일원	12,693	도 로
Ⅱ-2			축동면 사다리 133-11번지 일원	1,650	주차장㉚
Ⅱ-3			축동면 사다리 131번지 일원	1,810	유수지⑩
Ⅲ-1	Ⅲ	15,426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1,560	소공원㊺
Ⅲ-2			축동면 사다리 133-1번지 일원	2,100	완충녹지㊸
Ⅲ-3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890	완충녹지㊹
Ⅲ-4			축동면 사다리 120번지 일원	2,270	완충녹지㊺
Ⅲ-5			축동면 사다리 113-16번지 일원	6,267	완충녹지㊻
Ⅲ-6			축동면 사다리 118-1번지 일원	2,339	완충녹지㊼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Ⅰ-1 Ⅰ-2	사다리 산43-28번지	용도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권장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에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유수지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법규에 의해 건축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제어요소	적용구간	제어내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1-42호선과 중로2-53호선 교차지점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 진·출입불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중로2-53호선과 중로2-50호선 교차지점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 진·출입불허	

사 천 시 공 보

제758호

대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작성되는 대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공간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대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구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지침적용의 구성)

○ 본 지침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2장은 산업시설용지, 제3장 기타사항, 제4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제4조(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은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련법규 및 사천시 관련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본 지침 내용 중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제5조(용어의 정리)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법규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 된다.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되어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6.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7.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8.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6조(건축물의 용도)

○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제 내 용	
산업시설용지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7조(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350	-
70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350% 이하로 적용한다.

제8조(건축물의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제한없음

제9조(차량의 대지 내 진 · 출입)

①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 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③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주차장)

○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 주차단위구획시 법정 주차대수의 5% 이상은 대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할 것을 권장함

제11조(장애인을 위한 계획)

○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익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조례를 적용한다.

제3장 기타사항

제12조(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①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가능한 지주형 간판에 집약설치를 유도한다.

② 세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③ 둘출간판 및 옥상간판은 가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불허한다.

④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기타)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옥외광고물은 사용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본 지침과 상이하게 적용할 경우 사천시와 협의 후 적용하도록 한다.

제4장 지구단위계획 지침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 행위에 적용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 본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 도시관리계획(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5	대 동 소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43-28번지	1,560	-	1,560	사천시 고시 제2012-153호 (2012.9.13.)	

2) 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1	보행자도로	사다리 산43-28번지	250	-	-	-	
기정	2	녹지	사다리 산43-28번지	1,310	-	-	-	
소 계				1,560	-	-	-	

15. 지정(개발계획) 구역계 좌표조서(변경없음)

번호	X좌표	Y좌표	번호	X좌표	Y좌표
1	179908.8580	116650.5500	34	180172.6380	116860.4770
2	179910.6730	116655.7690	35	180175.8480	116857.5590
3	179915.5750	116669.8710	36	180202.0340	116850.2630
4	179918.7680	116676.5220	37	180218.2540	116841.0480
5	179921.6630	116682.5530	38	180222.6010	116839.6800
6	179923.3080	116688.5740	39	180228.5290	116831.6100
7	179928.0690	116698.8100	40	180223.1020	116813.1820
8	179930.9330	116704.9690	41	180219.9720	116807.7620
9	179944.7900	116721.0510	42	180251.2140	116781.0130
10	179953.9490	116736.9290	43	180260.7370	116774.5090
11	179956.0520	116740.2180	44	180277.3030	116751.6450
12	179982.6840	116770.9170	45	180281.3810	116741.2820
13	179999.1870	116806.2870	46	180283.5570	116737.3060
14	180009.0750	116823.6820	47	180283.3240	116724.4580
15	180022.1360	116849.1580	48	180292.5260	116719.0990
16	180027.3710	116859.3690	49	180281.7710	116692.3420
17	180038.3040	116873.6770	50	180281.6910	116681.8050
18	180039.5830	116875.3510	51	180103.6357	116455.3376
19	180039.8940	116877.2370	52	180011.9490	116531.8850
20	180042.9470	116877.4870	53	179946.8260	116586.2540
21	180045.5040	116881.8350	54	179946.3530	116586.6490
22	180054.1220	116888.1420	55	179936.3890	116595.0680
23	180066.2710	116898.6070	56	179932.0360	116597.9450
24	180082.0590	116913.4170	57	179927.8910	116599.8430
25	180088.5730	116916.3800	58	179927.8310	116600.9040
26	180093.2050	116906.6320	59	179926.9260	116600.2850
27	180111.1520	116902.2930	60	179914.3390	116607.0810
28	180118.9230	116904.6730	61	179913.6156	116622.9939
29	180131.5090	118899.3340			
30	180135.0790	116897.4480			
31	180144.7620	116888.4710			
32	180145.8810	116884.5780			
33	180157.2340	116874.4820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산단관리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끝.

사 천 시 공 보

제758호

<붙임1> 수용 · 사용할 토지 ·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목 적	
합 계				102,469	102,469						
1	축동면 사다리	산26-26	임	14	14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2	축동면 사다리	산26-27	임	102	102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3	축동면 사다리	산26-28	구	655	655	국토교통부					
4	축동면 사다리	산26-30	도	714	714	국토교통부					당초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변경
5	축동면 사다리	산43-28	임	53,309	53,309	○○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7, 10○동 ○20○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6	축동면 사다리	산43-30	임	208	208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7	축동면 사다리	산43-31	구	1,733	1,733	국토교통부					당초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변경
8	축동면 사다리	115-7	답	214	214	국토교통부					당초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변경
9	축동면 사다리	116-1	답	705	705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10	축동면 사다리	116-2	답	1,061	1,061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11	축동면 사다리	117	답	218	218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12	축동면 사다리	118-1	답	3,036	3,036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13	축동면 사다리	118-4	도	83	83	국토교통부					당초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변경
14	축동면 사다리	120-1	도	504	504	국토교통부					당초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변경
15	축동면 사다리	120	대	5,178	5,178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7, 10○동 ○20○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16	축동면 사다리	121-1	대	3,792	3,792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7, 10○동 ○20○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사 천 시 공 보

제758호

▢ 토지조서(계속)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목 적	
17	축동면 사다리	123-1	대	110	110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7, 10○동 ○20○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18	축동면 사다리	124	전	502	502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19	축동면 사다리	131	답	1,977	1,977	양○○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1-1, 들말홍한타운 1○○동 ○○3호				
20	축동면 사다리	132	전	998	998	양○○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1-1, 들말홍한타운 1○○동 ○○3호				
21	축동면 사다리	133-1	답	2,506	2,506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7, 10○동 ○20○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2	축동면 사다리	133-2	답	2,820	2,820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7, 10○동 ○20○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3	축동면 사다리	133-3	전	628	628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7, 10○동 ○20○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4	축동면 사다리	133-4	전	592	592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7, 10○동 ○20○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5	축동면 사다리	133-5	전	473	473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7, 10○동 ○20○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6	축동면 사다리	133-6	전	820	820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7, 10○동 ○20○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7	축동면 사다리	133-7	전	393	393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7, 10○동 ○20○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8	축동면 사다리	133-8	전	387	387	양○○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1-1, 들말홍한타운 1○○동 ○○3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29	축동면 사다리	133-9	전	929	929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7, 10○동 ○20○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30	축동면 사다리	133-10	전	727	727	양○○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1-1, 들말홍한타운 1○○동 ○○3호				
31	축동면 사다리	133-11	전	750	750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7, 10○동 ○20○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 토지조서(계속)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목 적	
32	축동면 사다리	133-16	전	1,025	1,025	양○○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1-1, 들말홍한타운 1○○동 ○○3호				
33	축동면 사다리	134	답	585	585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7, 10○동 ○20○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34	축동면 사다리	135-4	전	5,260	5,260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35	축동면 사다리	135-5	전	3,188	3,188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36	축동면 사다리	207-1	대	6,184	6,184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7, 10○동 ○20○호(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진주지점)	지상권설정	
37	축동면 사다리	1046	구	89	89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주식회사대동정비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3-121				변경

▢ 건축물조서 : 해당사항 없음

대동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3-2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대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유수지)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규 모	비 고
도 로	중로1-42호선	· L=347m, B=20~26m	
	중로2-53호선	· L=247m, B=15m	
	소로1-76호선	· L=37m, B=10m	
주 차 장	노외주차장 30	· A=1,650㎡	
공 원	소공원 45	· A=1,560㎡	
녹 지	완충녹지 53	· A=2,100㎡	
	완충녹지 54	· A=890㎡	
	완충녹지 55	· A=2,270㎡	
	완충녹지 56	· A=6,267㎡	
	완충녹지 57	· A=2,339㎡	
유 수 지	유수지 10	· A=1,81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성 명 : (주)대동정비 대표이사 양태관

   나. 주 소 : 진주시 상대동 33-121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 초** : 2012. 09. 13. ~ 2019. 12. 31.

   └ **변 경** : 2012. 09. 13.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사천시 공고 제2021-1635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내 시설 변경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센터 내 시설 현황 정비(안 제3조, 안 별표 1)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52516,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번호: 055-831-2596, 팩스번호: 055-831-606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의실, 대강당, 학습실 등”을 “강의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평생학습센터 내의 강의실, 대강당, 학습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 5. (생 략)	제3조(정의) ---------- ------- 뜻은 다음과 ------- ---. 1. ---------- -- 강의실---------- ----------.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5조(관리·운영)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사용료 징수기준(제10조 관련)

<table>
<tr><th>구분</th><th>공간별</th><th>구 분</th><th>시간</th><th>사용료 기준
(3시간이내)</th><th>비고</th></tr>
<tr><td rowspan="8">평생학습센터
강의실</td><td rowspan="4">1층
(배움실)
(나눔실)
(행복실)</td><td rowspan="2">평일</td><td>주간</td><td>20,000원</td><td rowspan="8">‣기준시간 초과 시간 당 10,000원 가산</td></tr>
<tr><td>야간</td><td>30,000원</td></tr>
<tr><td rowspan="2">토요일</td><td>주간</td><td>25,000원</td></tr>
<tr><td>야간</td><td>35,000원</td></tr>
<tr><td rowspan="4">3층
(제1 강의실)
(제2 강의실)
(제3 강의실)</td><td rowspan="2">평일</td><td>주간</td><td>20,000원</td></tr>
<tr><td>야간</td><td>30,000원</td></tr>
<tr><td rowspan="2">토요일</td><td>주간</td><td>25,000원</td></tr>
<tr><td>야간</td><td>35,000원</td></tr>
<tr><td colspan="6">※ 사용시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단, 사용시간 2시간이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간요금 징수
※ 휴관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td></tr>
</table>

관 련 법 규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사천시 공고 제2021-1638호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대보증의 폐해 해소를 위하여 2010년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각각 연대보증을 삭제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상환 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대보증인의 융자금 상환 책임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213, FAX : 831- 601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1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을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 3·6호서식)”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면·동장 경유)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읍·면·동장은 융자신

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융자금의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까지 시장에게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신청인과 해당 융자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기한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며, 2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중복 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해당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는 다시 융자금을 대부받을 수 없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호”를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융자수혜자”를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자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 또는 기업”을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융자수혜자”를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서식)”를 “별지 제7

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융자수혜자”를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의”로, “매분기”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분기”로,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또는 시장이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 ---------- ---------- ---------- ---------- ----------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7조(융자절차)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면·동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동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2·4·5호서식)	제7조(융자절차)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면·동장 경유)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읍·면·동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3·6호서식)	③ ----------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④ ---------- 자는 ---------- 정해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② (생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삭 제>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금의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까지 시장에게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신청인과 해당 융자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연장기한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며, 2회만 연장할 수 있다.

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사람은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 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1조(중복 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해당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는 다시 융자금을 대부받을 수 없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3. (생 략)	제14조(융자금의 반환) ----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 ----------. 1.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 2.·3. (현행과 같음)
제1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사후관리) ① ----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서식)	③ ----------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시장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8호서식)	제16조(융자실적 제출) --------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의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제5조제2항 관련)

내 용	배점 (100)	배점내역			비고
		상	중	하	
지 역 내 장기거주	20	(10년 이상) 20	(9-5년) 15	(4년이하) 10	
사업성공율 및 사업추진의욕	20	20	15	10	
사업참여 인 원	30	(3인 이상) 30	(2인) 20	(1인) 10	-20세 이상 -학생·직장인 제외
자기자본 투 자 율	30	(5% 이상) 30	(30% 이상) 20	(30% 미만) 10	-신규 투자비 기준

[별지 제7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 사후관리카드

<table>
<tr><td rowspan="2">채 무 자</td><td>성 명</td><td colspan="3"></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사 업 내 용</td><td>사업명</td><td colspan="7"></td></tr>
<tr><td>사업개요</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융 자 내 용</td><td>융자금액</td><td colspan="3">금 원</td><td>융 자 일</td><td colspan="3"></td></tr>
<tr><td>융자기간</td><td colspan="3">년거치 년 상환</td><td>상환방법</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6">원 리 금 상 환 및 운 영 실 태 (여 백 부족시 이 면 기 재)</td><td>조사일자</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상환실적</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업실태</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조사일자</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상환실적</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업실태</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비 고</td><td colspan="7"></td></tr>
</table>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210mm×297mm
백상지 70g/㎡

관 련 법 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대출이자율·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천시 공고 제2021-1649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적 향상 장학금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적 향상 기준 및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늘리며 특기 장학금 단체 종목의 인원 기준을 정하여 장학금을 합리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적 향상 장학금 기준 변경(안 별표 1)

- 성적 20%이상 향상한 자(20만원) → 성적 10%이상~20%미만 향상한 자(20만원), 성적 20%이상 향상한 자(50만원)
- 인원 제한: 학교당 2명 → 예산 범위 내
- 세부기준: 학교장이 정함 ⇒ 세부기준 마련

나. 특기장학금 단체 종목의 인원 기준을 정함(안 별표 1)

- 단체 종목 인원은 5명 이상일 경우 인정
- 5명 미만일 경우 개인 종목의 해당 순위 금액 x 인원수로 지급

다. 장학금의 지원사업에서 성적 향상 장학금 추가(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52516,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번호: 055-831-2586, 팩스번호: 055-831-606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관 제4조에 따른 사천시”를 “사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성적 향상 장학금: 관내 중·고등학생으로서 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업의 종류) 정관 제4조에 따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사업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의 지원사업 가.·나.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제2조(사업의 종류) 사천시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성적 향상 장학금 : 관내 중·고등학생으로서 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자 2. ~ 4. (현행과 같음)

[별표 1]

수혜 대상자의 선발기준 (제4조제2항관련)

<table>
<tr><th>구 분</th><th>지 급 기 준</th><th>비고</th></tr>
<tr><td>관 내
고 교
입 학 생</td><td>
▣ 일반고등학교에 입학 시 내신 석차 10%까지 장학금 지급.
단, 서부 3개면 소재 중학교는 3학년이 20명 미만인 경우 교내 석차 1위이고 성적 100점기준 환산시 90점 이상인 학생 1명을 5% 이내로 간주함.
<table>
<tr><td>5% 이내</td><td>5% 초과 ~ 10% 이내</td></tr>
<tr><td>300만원</td><td>200만원</td></tr>
</table>
▣ 전문계 고교 입학생은 내신 석차에 관계없이 입학성적 1등은 15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70만원, 4등은 50만원, 5등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 단, 2개학과 이상 모집하는 학교에서는 각 학과별 1등 중에서 입학성적 순위에 의하여 우선 등위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과 구분없이 전체 석차 등위에 따라 지급
▣ 내신석차 기준 장학금과 전문계 고교 입학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
▣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타지역 학교로 전학하거나 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지함(단, 관내 고등학교로 재입학하여 재선정될 경우 기존 장학금 범위에서 지급)
</td><td></td></tr>
<tr><td>한국폴리텍
대 학
항공캠퍼스
입 학 생</td><td>
▣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 수시 입학생은 고교 내신 성적 1위에게 100만원 지급
▶ 정시 입학생은 입학 성적 1위에게 100만원 지급
※ 단, 수시.정시 모집 입학생의 입학비율이 7:3 또는 3:7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입학생 비율에 따라 인원 책정
</td><td></td></tr>
<tr><td>관 외
대학(교)
입 학 생</td><td>
▣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table>
<tr><td>3개 평가영역 이상이 1등급인 경우</td><td>2개 평가영역이 1등급인 경우</td><td>1개 평가영역이 1등급이거나 3개 평가영역 이상이 2등급인 경우</td></tr>
<tr><td>200만원</td><td>100만원</td><td>50만원</td></tr>
</table>
▶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됨.
▶ 탐구영역은 2개 과목 1등급을 받아야 1등급 인정하고,
2개 과목 2등급 이상을 받아야 2등급 인정함.
</td><td></td></tr>
<tr><td>예술,체육
기타기능이
우수한
학생과 단체</td><td>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올린 학생과 단체
<table>
<tr><td colspan="3">개인 종목</td><td colspan="3">단체 종목</td></tr>
<tr><td>1위</td><td>2위</td><td>3위</td><td>1위</td><td>2위</td><td>3위</td></tr>
<tr><td>50만원</td><td>30만원</td><td>2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d>100만원</td></tr>
</table>
※ 단체가 5명 미만일 경우 개인 종목의 해당 순위 금액 x 인원수로 지급
※ 전국대회가 장학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결정은 대회 규모와 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함(연 1회에 한하여 지급)
</td><td></td></tr>
<tr><td>성적 향상
학 생</td><td>
▣ 해당 연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성적 10% 이상 향상자
<table>
<tr><td>20%이상</td><td>10%이상~20%미만</td></tr>
<tr><td>50만원</td><td>20만원</td></tr>
</table>
▶ 전 과목(또는 국·영·수) 평균 또는 석차 비교
▶ 학년 또는 학기 비교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 제한
</td><td></td></tr>
</table>

사천시 공고 제2021-1659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보건정책의 수립과 보건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소장의 개방형직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 성명(단체명) :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장) (생 략) <신 설>	제9조(소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